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36
-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찬성 20명)
- 발 의 일 : 2024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 2.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u></p> <p>①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통일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5월말 기준 6,405명으로 전국(31,370명)의 20.4%로 경기도(35.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 6,405명('24.5.31 기준)] ※ 행정국 제출자료

(단위: 명)

구 분	'24.5.31	'23.1.1	'22.1.1	'21.1.1	'20.1.1
서울시	6,405	6,595	6,776	6,970	7,094
비율(%)	20.4	21.0	21.5	22.1	22.9
전 국	31,370	31,365	31,503	31,521	31,005

※ 서울시가 전국의 20.4%로 경기도 35.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 거주 비율은 매년 소폭 감소추세임.

-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발취)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필요 재원 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국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다만,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경비 지원 시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른 공정한 공모절차 준수 및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생략)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

< 참고자료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4. 5. 2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 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5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6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7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8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29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0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1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2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3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4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5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7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3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호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40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41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2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3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5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6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7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48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 자원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49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5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51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2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3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4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 산업통상자 원부 · 원자 력안전위원 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 제5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 [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

(24.4.기준)

<p><b>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b> (해외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 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li> <li>-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li> <li>-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li> </ul>
<b>&lt; 국내 입국 &gt;</b>	
<p><b>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국정원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8~10주)</li> </ul>
<p><b>보호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교육기간(12주) 중 5주차에 결정여부 통보(비보호 결정시 조기수료)</li> </ul> </li> <li>- 보호결정 세대 단위 결정</li> </ul>
<p><b>하나원 정착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입소 후 사회적응교육 (12주, 400시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li> </ul> </li> <li>- 초기정착지원 : 주거알선, 정착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알선 : 하나원 수료 3~4주 전 주거 지역 배정(추첨제)</li> <li>• 정착기본금 :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하나원 수료 시 지급)</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세대별 기본금 : 1인 1,000만원, 2인 1,600만원, 3인 2,100만원, 4인 2,600만원, 5인 3,100만원, 6인 3,600만원, 7인 이상 4,100만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 후 전입 : 하나원 수료 후 정착도우미(센터 직원) 동행 서울시 전입</li> </ul>
<b>&lt; 거주지 전입 &gt;</b>	
<p><b>거주지 보호</b>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절차(전입신고 등) 진행, 임대주택 첫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배정 전용면적 : 2인 이하 33㎡이내, 3인 40㎡이내, 4인 이상 50㎡이내</li> <li>※ 입주 후 30년 이상 거주 가능(2년마다 계약 갱신)</li> </ul> </li> <li>- 사회적응교육(하나센터) : 전입 후 8일(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li> <li>- 주거지원금 지원 : 임대주택(SH 제공) 보증금 지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세대별 지원금 : (1인)16,000천원, (2~4인)20,000천원, (5인 이상)23,000천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 청소·방역 지원(세대당 25만원), 기초생활물품 지원(세대당 120~180만원)</li> <li>• 통일부 : 가전제품바우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지원(150만원)</li> </ul> </li> <li>- 사회보장지원 :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li> <li>- 취업지원 :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알선, 장려금 지원 등</li> <li>-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학비 지원</li> <li>- 상담지원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통한 지원</li> <li>- 보호담당관 : 거주지(자치구)·취업(고용지원센터)·신변(경찰서) 보호담당관 운영</li> </ul>